

보도
방
시
시
시

기안용지

분류기호
문서번호
주개 30321-769 (전화: 731-6393) 시
특별취
시
시

보존기간 영구·중요구 10.5.3.1
수신처 보존기간 '86, 5
시행일자

주개

결재
1986.5.29
건설관리국장

보조기관
건설관리국장 전결
주택개발과장
개발2계장
기안책임자 심관종

협조기관
법무담당관
(고시안 심사)
(이성태)

문서 통제
검인
1986.5.29

경유
수신
참조
자안참조
발신명의

협조
86.6.2
1986.5.29

발
1986.5.29

제목 주택개발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

(제 1 안) 내부 결재

1. 건설부 고시 제55호 ('81.2.20) 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79호 ('83.5.27) 로 지적승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563호 ('84.9.21) 로 사업계획결정한 답십리 제6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,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.

첨부: 사업계획결정 조서 1부. 끝

(제 2 안) 고시안

247명자 1986.6.28
담당자 법제처장 법무담당관
1986.6.28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*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*

1. 건설부 고시 제55호 ('81.2.20) 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9호 ('83.5.27) 로 지적승인,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563호 ('84.9.21) 로 사업계

1505-25(2-1)일(1)람 85.9.9 승인 190 mm x 268 mm 인쇄용지 2 급 60g/m²

획결정한 담십리 제6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1항의 ^{제5항}

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8, 5,

서울특별시장

【 아 래 】

1. 사업의명칭 : 담십리 제 6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

2. 위 치 : 서울시 동대문구 담십리동 464번지 일대

3. 면 적 : 67,831^m2



4. 토지이용 계획

용 도	당초면적 (m ²)	변경면적(m ²)	증 감(m ²)	비 고
택 지	52,390	52,326	- 64	
도 로	11,950	12,014	+ 64	
누 지	680	680	-	
광 장	1,410	1,410	-	
어린이공원	1,400	1,400	-	

5. 건축 계획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	비 고
주된용도	주택및근린생활시설	변경없음	-	
건립형태	공동주택 (APT)	"	-	
건 폐 율	25%이내	"	-	

용 적 율	300%이하	변경없음	-	
최고높이	41.4m	"	-	
배 치 도	생략	"	-	

(제 3 안)

수 신 : 총무처장관

발신 : 시 장

제 목 : 관보제재 의뢰

1.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및 동시행령 제 5 조, 제 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개발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별첨고시안을 통보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첨 부 : 고시안 2부. 끝

(제 4 안)

수 신 : 동대문구청장

1985. 10. 6
건설관리국장

참 조 : 주택과장

제 목 : 주택개발재개발사업 계획 변경결정 (통보)

1.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및 동시행령 제 5 조, 제 5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귀관내 답십리제 6 구역에 대하여 별첨과같이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고시하였으니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바람,

첨 부 : 1. 고시안 1부

2. 사업계획변경 결정조서 1부. 끝

(제 5 안)

수 신 : 건설부장관

참 조 : 도시개발과장

제 목 : 주택개발재개발사업 변경결정 (보고)

 답십리 제6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계획변경결정조서

1. 사업의 명칭 : 답십리 제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
2. 위 치 : 동대문구 답십리동 463, 464, 465
 동대문구 전농동 643, 644, 645 번지일대
3. 면 적 : 67,831제곱미터
4. 토지이용계획

용 도	당초면적 (m2)	변경면적 (m2)	증감	비 고
택 지	52,390	52,326	-64	
도 로	11,950	12,014	+64	
녹 지	680	680	-	
광 장	1,411	1,411	-	
어린이공원	1,400	1,400	-	

1988. 2. 29
 건설관리국장

5. 공공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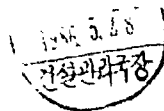
시 설 명	당초면적 (m2)	변경면적 (m2)	증감	비 고
광 장	1,411	1,411	-	
어린이공원	1,400	1,400	-	
녹 지	680	680	-	
도 로	11,950	12,014	+64	
계	15,441	15,505	+64	

6. 건축계획

- 가. 주된용도 :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- 나. 건립형태 : 공동주택 (아파트)
- 다. 건폐율 : 25%이내
- 라. 용적율 : 300%이내
- 마. 최고높이 : 41.4M
- 바. 배치도 :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

7. 가로망 조서

노선명	당 초			변 경			시 절	종 점	비 고
	폭 (m)	연장 (m)	면적 (m ²)	폭 (m)	연장 (m)	면적 (m ²)			
대 3 - 92	25	225	1,016	좌동	좌동	좌동	전농동643-110	전농동645-16	기정
대 3 - 130	25	140	1,638	"	"	"	전농동643-104	" 643-110	"
중 1 - 162	20	350	7,574	"	"	"	" 673	" 672	"
중 1 - 196	20	150	1,455	"	"	"	담십리동554	담십리동544	"
소 3 - 1	6	44.5	267	"	"	"	" 555	" 463-18	
광 2 - 1	-	-	-	50	63	64	" 543	" 464-120	기정



6. 개발기준

- 가. 건축계획은 가급적 기존건물을 전면 철거하여 공동주택(아파트 및 부대시설)을 건립한다.
- 나. 관리처분계획은 공동주택 건립후 분양자에게 해당면적을 공유지분으로 분양지를 지정한다.
- 다. 지구내 국.공유지는 점유자에게 시행인가후 주택건립전 불하 조치하여 연교권은 동당 165m²를 한도로 인정한다.
- 라. 공동주택건립후 지구내 주민을 수용하고 나머지 분양대상자 선정은 별도 서울특별시 분양계획에 따르며 분양금은 사업비에 충당한다.
- 마. 건축규모는 주민능력에 따라 결정하되 전체 건립세대의 1/2이상 국민주택 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바. 답십리동 645-1, 645-2의 도로 저축 건물은 제3지구에 포함하여 시행한다.
- 사. 지역여건에 따라 공공시설 (도로)를 중심으로 4개지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아. 답십리동 463번지의 지역아파트 층고협의를 관계당국의 별도 협의 후 시행한다.

